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군진의학 제도 연구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A Study of the Military Medical System of Central Military Comm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PARK Hun-pyeong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he medical system of the Central Military Comm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practiced by military yakbang (clinicians 藥房), acupuncturists, and horse veterinarians. By analyzing and verifying various literatur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In the late Joseon Dynasty, military yakbang prioritized internal medical treatment over surgical treatment. Military yakbang were recognized before military acupuncturists were and had more medicinal gardens. This can be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Medical Specialized Book that focuses on drug prescription. 2) The positions of military yakbang and military acupuncturists were not preferred by the Western Medical Offices (洋醫司). For example, in the latter days of King Sukjong's reign, positions were appointed from the Western Medical Offices but, on appeal, outside doctors were included as well. This is understood in terms of salary levels and guarantees of career opportunities. 3) The military acupuncturist was not selected based on ability as per the rules. If that was the case, more military acupuncturists would have been selected as royal acupuncturists (內鍼醫) under the system that continued until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comparative studies will be conducted between local military medicine and the early Joseon's military medicine, thereby intensifying research on military medicine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military medicine, Yagbang, acupuncturist, horse doctor

I. 서론

임진왜란을 겪은 16세기 말 이후 訓練都監을 비롯한 여러 군영이 설치되면서 조선전기 五衛제 중심의 중앙군제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김종수는 이에 대하여 公兵제에서 私兵제로, 番上兵제에서 長番兵제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했다.¹⁾

한양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군영은 이른바 5군영으로 대표된다. 5군영 중 가장 먼저 생긴 훈련도감은 1593년 가을에 浙江병법의 보급과 조총병인 포수 양성을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었다.²⁾ 이후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의 군영이 설치되어 5군영을 구성하였다. 5군영 외의 중앙군영으로는 정조 시기 경기 수원에 설치되었던 壯勇營,³⁾ 왕권 호위를 담당하던 扈衛廳, 훈련도감 혁파 이후 1882년 만들어진 親軍營이 있다.

이러한 중앙군영에는 장교와 군병 치료를 위한 별도의 관원이 있었다. 군문약방과 군문침의가 그 사례이다. 군문

접수 ▶ 2022년 04월 13일 수정 ▶ 2022년 05월 09일 채택 ▶ 2022년 05월 09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61-330-3525 E-mail : lillipute@dsu.ac.kr

- 1) 공병제는 끊임없이 지휘관과 군인을 교체하는 방식이고 사병제는 고정된 지휘관이 군인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직접 전쟁에 나가는 방식이다. 변상병제는 일정한 번차에 의하여 교대 근무하는 방식이며, 장번병제는 계속 장번으로 근무하고 급료를 받는 방식이다. 김종수, 『속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2018:121-146.
- 2) 노영구, 「조선후기 기병 강화와 훈련도감 마병의 운용」: 노영구, 이왕무, 정정남, 유현재, 최주희, 유승희 외 2인,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2018:29.
- 3) 김준혁에 따르면 장용영은 “친위군 강화, 군역법 혁파를 통한 민생안정, 북벌을 위한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 창설되었다. 김준혁, 『정조가 만든 조선의 최강 군대』, 남양주:더봄, 2018:197-236.

약방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壯勇營古事』를 보면 “본 영에 설치된 약방[장용영약방]은 군병의 구제와 치료에 쓰이기 위함이다. 신설된 처음에는 규모가 비록 미비했으나 이듬에 따라 결과를 책임지게 했으므로 장교와 군병 중에 약값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자는 병방에 訴를 내어 매번 製給 받는 바탕으로 삼아 약물로 調治하고”라 하였다.⁴⁾ 다른 군문약방도 설립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이 고급 장교를 일차 대상으로 삼음에 비하면, 시혜 대상이 확대되었다.⁵⁾ 다만 고려시대나 조선전기 군진의학이 분석되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언제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후기 군중약방의 설립목적을 보면 현재 국군의 군의관과 그 성격이 같다. 다만 약값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이들에만 한정시켰다는 점은 다르다. 현재 군의관 제도에는 한의사 전문의 면허자로 임관되는 한방군의관 제도가 있다.⁶⁾ 한방군의관은 전체 군의관 중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전통의학은 주류의학이었으며, 군진의학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해에 따르면 조선후기 군영 관련 자료는 현재 95종 702책이 전하는데, 장서각이 59종(569책)으로 81%, 규장각이 30종(120책)으로 17.1%을 차지하여 장서각과 규장각에 대부분이 소장되어있다.⁷⁾ 이렇게 군영자료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사적인 관점에서 조선시대 軍醫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드문 편이다. 기존 의약제도사 연구는 중앙군영 직제를 다루거나,⁸⁾ 다른 의약 관청을 논하면서 부수적으로 군의를 언급하였다.⁹⁾ 그 외 군진의학 전문서 연구가 있었다. 먼저 『軍中醫藥』을 통해서 折傷보다 疫

氣諸病 내용이 더 많음이 확인되었다.¹⁰⁾ 『行軍方便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6개의 門으로 구성되었는데 외상은 療傷에 불과하다. 그 처음에 備豫를 두어 굶주림을 대비하는 내용을 두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杜防, 일반 질환인 兪疾, 응급질환 치료인 救解에 걸쳐 내상질환을 다룬다.¹¹⁾

본고는 조선의 군의 제도인 군문약방, 군문침의, 군문마의를 중심으로 문헌을 통하여 관련 규정 등을 살피고,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조선후기 군진의학의 특징을 살피면서, 이에서 나아가 현재 한의학의 군진의학으로서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군문약방

1) 규정

(1) 관제 변화

군문약방은 兩醫司¹²⁾에서 分差되는 의관직으로 5군영 중 가장 먼저 생긴 훈련도감에 1원의 정원이 생긴 이래로 다른 군영도 개설시 훈련도감을 따랐다. 군문약방의 관제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문헌은 『各營整廳廳錄』¹³⁾, 『新補受教輯錄』¹⁴⁾, 『惠局志』¹⁵⁾, 『萬機要覽』¹⁶⁾, 『六典條例』¹⁷⁾가 있다.

4) 장용영 편. 정동진, 류주희, 문순요 역. 『역주 장용영고사』. 수원:수원시. 2005:81. 일부 번역문을 원문에 따라 수정하였다. “本營設置藥房, 卽爲軍兵救療之需, 新設之初, 規模雖未各宜有循各責實之, 擧將校軍兵中藥材之不能自力辦出者, 呈訴兵房以爲每每題給之.” 장용영 편. 『원문 장용영고사』. 수원:수원시. 2005:45.

5) 이현숙. 「몸 질병 권력 -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2003;6:11-41.

6) 이선동에 따르면 한방군의관은 1976년 1월 특전사에서 침구교육을 실시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한방진료에 대한 최초 출발점이었다. 이후 1989년에 군의 병과로서 ‘한방과’가 처음 설치되어 한방군의관 17명이 임관되었다. 이선동, 최찬호. 「군장병의 한방 양방군의관 필요성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방 군의관 제도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대한예방의학회지. 1998;2(1):67.

7) 정해은.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류 자료에 관한 기초적 검토」. 장서각. 2000;4:130-131.

8)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3:394, 427-429.

9) 박훈평. 「의정부 약방 식례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20;33(1):24.

10) 박상영 등에 따르면 『군중의약』은 명대 王鳴鶴이 저술한 의서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유일한 군진의학 전문서”이다.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군중의약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1):32, 35-39.

11) 『行軍方便方』은 청대 나세요가 1852년 저술한 군진전문서이다. 조선후기 필사본인 미키 사카에 소장본의 복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이외 국민대도서관에도 소장 중이다. 오준호. 「군진에서 행군방편편방의 구성과 내용」. 혜화학회지. 2014;22(2):57-66.

12) 본고에서 兩醫司는 전의감과 헤민서를 말한다.

13) 1703-1705년 사이 이정청의 양역변통에 관한 사항을 담은 문헌이다. 군영의 직제에 관한 내용이 있다.

14) 1739년(영조 15) 조현명이 주관하여 『수교집록』 이후 공포된 법령 중에서 가려 뽑은 법전이다.

15) 강위병에 의해 1719년 처음 저술되어 변태항에 의해 1778년 중수된 헤민서 관청지이다.

16) 서영보와 심상규가 왕명에 의해 1808년 재정 및 군정 전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여러 문헌에서 군문약방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표 1).¹⁸⁾ 1746년에 간행된 국전인 『속대전』에서는 훈련도감 등 5군영 직제가 나오긴 하는데 약방 등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⁹⁾ 『신보수교집록』에 총융청과 수어청약방의 혁파가 반영된 이후, 정원의 변화는 없다.

표 1. 군문약방 정원 변화²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각영이정청 등록 1705	1	1	1	-	1
신보수교집록 1739	1	1	-	0	-
해국지 18C	1	1	1	0	0
만기요람 1808	1	1	1	0	0
육전조례 1867	1	1	1	0	0

문헌에서 ‘약방’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이점은 다음의 2가지이다.

먼저 『각영이정청등록』에서 훈련도감, 어영청의 경우 ‘약방’을, 총융청에서는 ‘敎療官’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해국지』에서 혁파된 총융청약방을 기록하면서 ‘약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료관이 어떤 특정 약방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만기요람』에서 ‘약방’은 元額(훈련도감)이나 軍摠(금위영, 어영청) 항목에 배속되었는데, 『육전조례』에서 ‘약방’ 등이 將校 항목에 속해있다(그림 1). 그러나 장교가 군중에 비하여 상위의 직임이나, 『만기요람』의 군영별 ‘약방’ 항목 배속이 일정하지 않아 별다른 의미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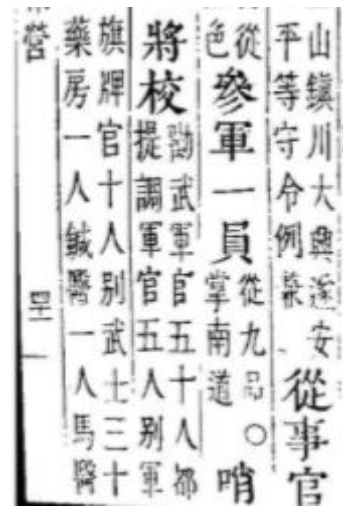


그림 1. 『육전조례 8책』 금위영약방 기록

이들 문헌을 통하여 일부 약방의 개설과 혁파 시기를 알 수 있다.

먼저 훈련도감약방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하여 장서각 소장본 『훈국총요』(1864-1895)를 보면 “숙종 갑신년에 처음 만들어졌다.”²¹⁾이라 하였는데 이는 약방을 兩醫司 의관으로만 임명하기 시작한 때이며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므로 오류이다. 훈련도감은 1882년에 혁파되어 친군영으로 바뀌게 된다.

금위영과 어영청약방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만기요람』을 보면 1694년과 1657년이다.²²⁾ 금위영약방의 개설 시기는 금위영의 규정집인 『금위영사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²³⁾ 금위영과 어영청은 1881년 통합되어 壯禦營으로 바뀌게 된다.

1705년에 완성된 『각영이정청등록』에 총융청약방은 기록된 반면,²⁴⁾ 수어청약방은 기록이 없다. 이는 1747년의 『승정원일기』에 군문약방에 대하여 三軍門만 언급한다.²⁵⁾ 따

17) 육조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모아 1867년 간행한 행정법전

18) 『각영이정청등록』 훈련도감조, 총융총개군제조, 금위영구군제조, 수어영구군제조. 본고에서 『각영이정청등록』 원문은 이정청(1705). 『各營整廳謄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신보수교집록 下 병진』 경관직조. 본고에서 『신보수교집록』 원문은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강위빙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해국지』. 서울:퍼플. 2015:69. 서영보, 심상규 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역. 『국역 만기요람 2』.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1:202, 249, 261, 287, 293, 295, 322. 『육전조례 8책』 훈련도감조, 금위영조, 어영청조. 본고에서 『육전조례』 원문은 홍중서(1867), 『六典條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

19) 『속대전 권4 병진』 경관직조. 본고에서 『속대전』 원문은 김재로(1746). 『續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20) 표 내용에서 “-”에서는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이다. 이하 표에서 모두 동일하다.

21) 『훈국총요』(1864-1895) 將校조. 『肅宗甲申冊設』. 본고에서 『훈국총요』(1864-1895) 원문은 훈련도감(1864-1895). 『訓局摠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22)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61, 295.

23) 『금위영사례』 將官將校員役軍兵摠數조. 『肅廟甲戌創出』. 본고에서 『금위영사례』 원문은 금위영(연대 미상). 『禁衛營事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30.)

24) 舊官制조에 없고 改軍制조에만 수록되었지만 이 시기 처음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 금위영약방의 경우도 舊官制조에 없고 改軍制조에만 수록되었지만, 구관계 시기에도 있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라서 1747년 이전에 수어청과 충용청약방은 혁파되었다. 요약하자면 수어청약방의 혁파는 1705년 이전, 충용청약방의 혁파는 1705년에서 1747년 사이로 추정된다. 『해국지』에 따르면 두 군영의 경우 혁파 전 정원은 1원이었다.²⁶⁾

장용영은 정조가 1785년에 국왕 호위 전담부대로서 창설한 壯勇衛를 확대한 군영으로 1793년 창설되었다가 1802년 혁파되었다. 그 시기 만들어진 군문 관련 문헌이 없다. 따라서 장용영을 다룬 문헌에서만 관련 내용이 있다. 대표적인 문헌이 장용영의 여러 규정을 담은 『壯勇營大節目』으로 이를 통하여 약방 정원이 1원, 1789년에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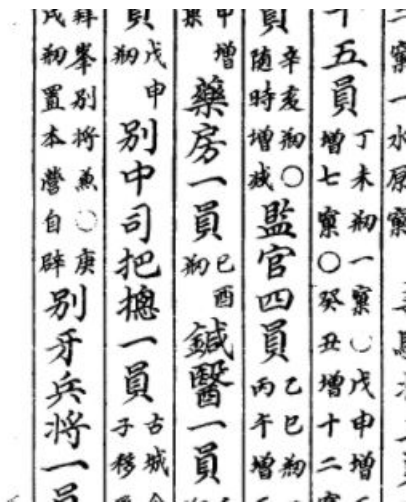


그림 2. 『장용영대절목 1책』 ‘약방’ 기록

문헌을 통해 살펴본 군문약방의 개설 및 혁파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군문약방의 개설 및 혁파 시기

	소속	개설 시기	혁파 시기
1	훈련도감	?	1882년
2	금위영	1694년	1881년
3	어영청	1657년	1881년
4	수어청	?	1705년 이전
5	충용청	?	1705-1747년
6	장용영	1789년	1802년

(2) 임명 및 체차

『승정원일기』를 보면 군문약방의 임명은 원래 정해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의료관청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실력이 있는 이를 임명하였다. 그러다 1690년(숙종 16) 의관 등이 상언하고 예조에서 복계하여서 군문 침의와 약방을 兩醫司 관원 중에 침약에 정통한 이를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국지』에 따르면 군문약방은 양의사 현직 인원에서 분차되었다.²⁸⁾ 그러나 『만기요람』에서는 “진직자 중에 임명된다”²⁹⁾하였으므로 양의사 내에서의 임명 방식 또한 시기에 따라 다르다.

1704년(숙종 30) 양의사 관원 등이 군문침의와 약방을 양의사 소속이 아닌 이로 임명해달라고 상언하자, 예조판서 민진후가 “군문약방은 군문 스스로 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받아들여졌다.³⁰⁾ 그런데 1726년(영조 2) 8월, 예조판서 鄭宅河가 아뢰어 다시 양의사 중에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려 했으나,³¹⁾ 어영청의 반대로 무산된다.³²⁾

『해국지』에도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군문 스스로 임명함을 정식이라 하였다.³³⁾ 이러한 임명 방식의 혼란은 1785년(정조 2) 9월에 方外人에 관계없이 임명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³⁴⁾ 그 이후 더이상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

25) 『승정원일기』 1747년(영조 23) 12월 10일 기사, 본고에서 『승정원일기』 원문은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2.1.10.)

26) 강위빙, op. cit. p. 69.

27) 『壯勇營大節目 1책』. 관직조. “藥房一員[己酉瓶].” 본고에서 『장용영대절목』 원문과 이미지는 장용영(1791-1802). “壯勇營大節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28) 『해국지 식례』 분차조. 강위빙. op. cit. p. 69.

29) 서영보, 심상규. op. cit. p. 261.

30) 『승정원일기』 1704년(숙종 30) 9월 10일 기사. “各軍門則中間創設, 元無定式. 勿論醫司與方外, 擇其術業精通者差定. - 중략 - 而庚午年因醫官等上言, 自該曹覆啓, 五上司及各軍藥房, 並以兩醫司醫員精通針藥者, 差送事申飭.”

31) 『승정원일기』 1726년(영조 2) 8월 3일 기사. “即今五上司·各軍門藥房及鍼醫, 或有他技冒屬, 與不爲立仕於醫司者, 並爲汰去, 其代, 依舊例, 自醫司擇差以送, 而遞代之際, 必有文移於本曹, 以爲照管檢飭事, 入啓蒙允, 而今者兩軍門藥房, 並是方外之人, 一依受教內辭意, 更加申飭, 分付兩營, 方外之人, 一併汰去, 以兩醫司醫員擇差之意, 入啓定奪云.”

32) 『승정원일기』 1726년(영조 2) 8월 5일 기사. “蓋軍門與他衙門有別, 將校軍兵等救療之任, 殊涉重大, 勿論醫司及方外, 必擇術業精明者, 自辟差定者, 自是舊規, 而又有甲申年先朝定奪, 則即今自辟差定之人, 無端汰去, 極爲可惜. 依甲申年定式, 軍門藥房鍼醫, 自本軍門自辟差定事, 更爲定式施行, 何如? 傳曰, 云.”

33) 강위빙 저. op. cit. p. 69.

34) 『승정원일기』 1785년(정조 9) 9월 17일 기사. “耆社·樞府及三營門藥房窠取才一款, 原無概見於大典, 依前以方外人, 通濫差定事, 定式施行.”

고, 이러한 방식이 1895년 삼군영약방이 혁파되기까지 유지된다.³⁵⁾ 군문약방의 임명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군문약방의 임명 방식

	연월	내용	출전
1	1690 이전	정해진 바 없음	승정원일기
2	1690. (숙종 16)	兩醫司 의관 중에 임명	승정원일기
3	1704.9.	軍門 스스로 임명	승정원일기 해국지
4	1726.8. (영조 2)	兩醫司 의관 중에 임명하려다 무산	승정원일기
5	1785.9.17. (정조 2)	方外人을 通濼하여 임명	승정원일기 훈국총요

『해국지』에 따르면 군문약방의 임기는 별도로 없었다.³⁶⁾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아버지의 喪, 일신의 질환이 아닌 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을 때 임명되는 軍兵敎療官도 양의사 현직에 있는 이로 임명되고 군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양의사에서 분차되던 시기의 군문약방과 유사하지만 군병구료관의 경우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끝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⁷⁾

(3) 급료

군문약방들에 대한 급료는 해당 군문의 사례집에서 찾을 수 있다.

『訓局摠要』는 훈련도감의 제반 규정을 알 수 있는 문헌이다. 현재 필사본 3종이 전한다. 장서각 소장으로 1820년의 1책본(청구기호 K2-3405), 고종 연간(1864-1895)의 2책본(K2-3406)이 있고, 일본 동양문고 소장의 19세기 1책본이 있다.³⁸⁾ 1820년 본에는 훈련도감약방 급료에 대한

내용이 없다. 『禁衛營事例』는 1867년에 작성된 금위영의 규정집이다. 『御營廳舊式例』는 1707년에 작성된 어영청의 규정집이다.³⁹⁾ 이를 보면 어영청약방은 아래와 같이 급료를 받았다. 1868년의 『어영청식례』에는 급료 관련 내용이 없다.⁴⁰⁾ 수어청 관련 규정집은 현재 소장처가 없다. 『摠戎廳事例』는 총융청 제반 규정을 알 수 있는 문헌으로 장서각 소장 필사본이다.⁴¹⁾ 여러 군문약방 급료 기록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군문약방 급료 기록

	판본	내용
1	『훈국총요』 동양문고본	쌀 1섬, 콩 9말. 양향색이 준다. 朔下錢 4냥. 군색이 준다. ⁴²⁾
2	『훈국총요』 장서각본 1864-95	달마다 급료로 쌀 1섬 1말, 콩 9말, 양향색이 준다. 달마다 받는 무명 2필, 군색이 준다. 달마다 받는 돈으로 4냥, 군색이 준다. 幸行할 때의 군복 값으로 무명 3필, 세찬미 1섬, 양향색이 준다. 양향색납약값, 돈으로 216냥 5전, 쌀 1섬. 북병영녹용을 대신하는 돈 중에서 10냥. 납약 때 炭 13섬, 땀나무 950개 ⁴³⁾
3	『금위영사례』	『價布一年應下』조. 침의 1인, 약방 1인은 각 2필씩이다 ⁴⁴⁾ 『米一年應下』조. 침의 1인, 약방 1인은 1섬 11말씩이다. ⁴⁵⁾
4	『어영청구식례』	『朔下式例』조. 1섬 11말 ⁴⁶⁾ 『新營式例』조. 炭 1섬을 달마다 받는다. 땀나무 4동을 달마다 받는다. ⁴⁷⁾
5	『총융청사례』	『將官將校軍兵員役受料實數』 달마다 급료로 쌀 1섬, 동짓날 쌀 4말. 糧餉色이 지급한다. 朔錢 4냥, 봄가을 옷값 매번 똑같이 8냥, 歲饌錢 1냥 7전, 冬歲炭 6섬, 軍色이 지급한다. ⁴⁸⁾ 『冬炭例下』, 『歲炭例下』 각 3섬 『素易服次例下』 삼베 1필 반[필당 값은 3냥 5전] 『大祥易服次例下』 삼베 3필을 대신하는 돈 6냥

35) 『훈국총요』(1864-1895). 將校조. “藥房一員[肅宗甲申册設, 以兩醫司人差出矣. 正廟乙巳, 以方外人通濼差出事定式.]”

36) 『해국지 식례』 분차조. 강위빙. op. cit. p. 69.

37) 『해국지 식례』 공사조. 강위빙. op. cit. p. 71.

38) 동양문고 소장본 원문은 본고에서 훈련도감(19세기). “訓局摠要”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DB(2021.12.29.). 장서각 소장 1책본(청구기호 K2-3405)은 훈련도감(1820). “訓局摠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본문 중에 “純宗”이 언급되므로 철종 이후 저술된 문헌이다.

39) 본고에서 『어영청구식례』 원문은 어영청(1707). “御營廳舊式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40) 본고에서 『어영청식례』 원문은 어영청(1868). “御營廳式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41) 본고에서 『총융청』 원문은 총융청(연대 미상). “摠戎廳事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42) 『훈국총요』. 官制조 “米一石, 太九斗, 糧餉色. 朔下錢四兩, 軍色.”

43) 『훈국총요』 제1책(동양문고본) 將官將校員役軍兵料祿數조 “藥房一員[每朔料米一石一斗, 太九斗, 糧餉色. 朔下木二疋, 軍色. 朔下錢四兩, 軍色. 幸行時軍服價木三疋, 歲饌米一石, 糧餉色. 臘藥價. 錢二百十六兩五錢, 米一石. 北兵營鹿茸代錢中十兩. 臘藥時炭十三石, 燒木九百五十箇.]”

44) 『금위영사례』 가포일년응하조. “針醫一人藥房一人各二疋.”

이상 오군영약방의 급료를 살펴보면 시기별 근무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各司藥房과 비교하여 군문약방의 급료 수준은 어떠할까. 각사약방 급료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고종대에 완성된 『審藥事例』이다(표 5).⁴⁹⁾

표 5. 『심약사례』의 각사약방 급료

근무처	녹미	기타
의정부	10섬 12말	정월미 5섬, 숯값 3냥, 驅價 36냥, 여름철 옷값값 5냥, 겨울철 옷값값 5냥, 壯紙 값 14냥 4전 등
예조	달마다 쌀 12말, 콩 5말	蔘價錢 3냥 6전, 壯紙 4장 반, 백지 1속, 설날의 붉은 비단 2폭 등
충훈부	달마다 쌀 12말, 콩 5말	매주콩 10말, 제호탕 1그릇, 黃淸 1되, 참깨 1말, 씨를 뺀 숨 1근, 나락 11섬 등

시기가 달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녹미는 각사약방이 군문약방에 비하여 다소 적고, 부수적으로 받는 다른 물품들이 많다. 그런데 각사약방의 치료대상이 조정의 신하들이라는 점에서, 군문약방에 비하여 의술 실력을 인정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렇다면 양의사 출신으로⁵⁰⁾ 실력 좋은 藥醫가 굳이 각사약방이 아닌 군문약방을 지원할 이유는 없었다. 앞에서 군문약방의 임명방식을 논하면서(표 3) 숙종 후기에 양의사에서 임명되는 방식을 취하다가 양의사에서 상소하여 방외의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바뀜을 보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실제로 군문약방과 침의는 양의사 전력자가 선호하는 직임이 아니었다.

2) 군문약방 일람

문헌을 통하여 조사된 군문약방은 16명으로 다음과 같다(표 6).⁵¹⁾ 16명 중 전의감과 헤민서 출신은 5명으로 31.2%를 차지하며, 중인 가계 출신은 6명으로 37.5%이다. 표본 사례만 보면 양의사 출신과 방외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군문약방을 역임한 후에 내의, 의약동참의, 내침

의로 내의원에 입속한 이는 6명(내의 1, 동참의 4, 내침의 1)으로 비율이 일견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내의원에 입속한 이들의 전력을 설명하면서 군문약방 출신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6명의 내의원 입속 시기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는 않는다. 다만 내의원 입속자 중에 동참의로 입속되는 높은 비율(6명 중 4명)은 주목된다. 장용영약방은 혁파를 전후하여 의약동참으로 내의원에 입속한다. 아마도 짧게 운영되고 혁파되었기에 김시중이 유일한 장용영약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전력이 없이 어의인 의약동참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 약방의 의술 실력이 좋았다는 증거로서 정조가 장용영에 가졌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6. 군문약방 목록⁵²⁾

훈련도감(?-1882)				
	이름	재임 기간	관력	비고
1	鄭安世	-1680.윤.8.6	藥房/同參	-
2	承漢樞	-1786.12.14	藥房	-
3	李周憲	-1779.8.10	醫科/藥房/內醫	外醫 妻父 醫科
4	金義圭	1880	藥房	-
금위영(1694-1881)				
	이름	재임 기간	관력	비고
1	張有齡	1705.1.23.-	醫科/藥房/典醫監正	外醫
2	李世珪	-1782.5.10	審藥/藥房	外醫 父 醫科
3	周命新	-1786.12.14	惠民主簿/藥房/同參	外醫
4	李圭桓	-1872.6.9 ⁵³⁾	藥房/外醫	-
어영청(1657-1881)				
	이름	재임 기간	관력	비고
1	崔常鉉	-1680.윤.8.6	藥房	-
2	李秀蕃	-1704.9.6	惠民主簿/藥房	外醫
3	田東里	-1736.9.9	藥房/內鍼	-
4	張量頭	1746.2.26.-	藥房	-
5	蔡膺祐	-1753.3.3	藥房/同參	-
6	金來國	-1779.8.10. -1786.12.14	藥房	-
7	崔益周	1880	藥房	-
장용영(1789-1802)				
	이름	재임 기간	관력	비고
1	金時中	-1801.11.21	藥房/同參	父 外醫

45) 『금위영식례』 미일년응하조. “針醫一人, 藥房一人, 各一石十一斗.”

46) 『어영청구식례』 삭하식례조. “一石十一斗藥房料.”

47) 『어영청구식례』 신영식례조. “炭一石藥房每朔下 柴木四同藥房每朔下.”

48) “每朔料米一石, 冬至米四斗, 餉色上下, 朔錢四兩春秋衣資每等八兩歲饌錢一兩七錢冬歲炭六石, 軍色上下.”

49)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심약사례 하』. 서울:피플. 2015:97-104.

50) 오상사약방은 대부분 양의사 출신으로 취제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51) 박훈평. 『조선후기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54, 100, 234, 325, 327, 368, 415, 416, 430, 493, 503, 513, 527. 재임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52) 재임 기간에서 연도 앞뒤의 “-”는 이전, 이후 시기를 말한다. 이하 목록에서도 모두 동일하다.

2. 軍門鍼醫

1) 규정

(1) 관제 변화

군문침의의 경우 도성 내 삼군영에만 있고 총융청과 수어영에는 처음부터 없었다. 문헌을 통해 살펴본 군문약방의 개설 및 혁파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7).

표 7. 군문침의 정원 변화⁵⁴⁾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각영이정청 등록 1705	-	1	1
신보수교집록 1739	1	1	-
혜국지 18C	1	1	1
만기요람 1808	1	1	1
육전조례 1867	1	1	1

금위영과 어영침침의가 처음 생긴 시기는 『만기요람』을 보면 1694년과 1657년이다.⁵⁵⁾ 금위영침의의 개설 시기는 금위영의 규정집인 『금위영사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⁵⁶⁾ 그런데 『승정원일기』를 보면 백홍령이 금위영침의로 1684년에 처음 임명된 내용이 있다. 따라서 개설 시기는 1684년으로 보아야 한다.

『장용영대절목』(1791-1802년)을 보면 장용영침의는 정원이 1원, 1792년에 만들어졌다.⁵⁷⁾

문헌을 통해 살펴본 군문침의의 개설 및 혁파 시기는 다음과 같다(표 8).⁵⁸⁾

표 8. 군문침의의 개설 및 혁파 시기

	소속	개설 시기	혁파 시기
1	훈련도감	?	1882년
2	금위영	1684년	1881년
3	어영청	1657년	1881년
4	장용영	1792년	1802년

53) 『금위영등록』 임신년. 6월 9일 기사. 본고에서 『금위영등록』 원문은 금위영(1682-1883). 『禁衛營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54) 『각영이정청등록』 훈련도감조, 어영청구군제조, 금위영구군제조. 『신보수교집록 下 병전』 경관직조, 강위빙. op. cit. p. 69. 서영보, 심상규. op. cit. p. 202, 249, 261, 287, 293, 295, 322. 『육전조례 제8책』 훈련도감조, 금위영조, 어영청조.

55)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61, 295.

56) 『금위영사례』 將官將校員役軍兵總數조. “肅廟甲戌創出.”

57) 『壯勇營大節目 제1책』 관직조. “鍼醫一員[壬子瓶].”

58)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61, 295.

59)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군중의약 번역 연구」. op. cit. p. 35-39. 오준호. op. cit. p. 57-66.

60) 동양문고본 『훈국총요』 관제조.

61) 표 내용 중 ‘□’이 판독 불가능한 글자이다.

앞서 논의했던 군문약방의 개설 혁파 시기와 비교하자면, 군문약방이 침의에 비하여 정원이 많고 먼저 개설되었다. 군문침의는 삼군영과 장용영에만 개설되었다. 반면 군문약방은 오군영 모두에 개설되었다. 이는 군진의학전문서의 내용이 折傷보다 疫氣諸病 내용이 더 많다는⁵⁹⁾ 특성과도 연결된다. 즉 조선 후기 군진의학은 약 처방 치료 위주로 외과 치료보다 내과 치료를 우선시했다.

(2) 기타

문헌에 따르면 대개 군문침의의 임명은 군문약방 임명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군문침의의 임명방식은 앞서 논의되었던 군문약방 임명 방식(표 3)을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동양문고본 『훈국총요』를 보면 훈련도감침의는 처음에는 별무사를 겸직시켰다가, 을유년에 이르러서야 별도로 정원을 두었다(표 9).⁶⁰⁾ 동양문고본은 19세기본으로 추정되는데 1808년의 『만기요람』에 훈련도감침의는 별도의 1원 이므로 을유년은 1765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고증이 되지 않는다.

표 9. 동양문고본 『훈국총요』의 훈국침의 임명 방식⁶¹⁾

연도	내용
무인년	別武士 兼差
계묘년	遞□
을유년	別設一窠

여러 문헌에서 군문약방과 군문침의의 급료는 동일하다. 군문침의의 급료는 앞서 논의한 군문약방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2) 군문침의 일람

문헌을 통하여 조사된 군문침의는 26명으로 다음과 같다(표 10).⁶²⁾ 26명 중 백홍령은 금위영과 어영청침의로 재임하였으며, 조기환은 어영청침의로 2회 근무한 사례가 있다.

26명 중 전의감과 해민서 출신은 4명으로 15.38%를 차지하며, 중인 가계 출신은 15명으로 57.69%이다. 군문침의는 군문약방에 비하여 양의사 출신이 적은데, 침의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군문침의 목록

훈련도감(?-1882)			
	이름	재임 기간	관력
1	皮世麟	1728.12.11.-	鍼醫/內鍼
2	李景溥	-1778.8.10.	鍼醫
3	張載遠	-1786.12.14	鍼醫
금위영(1684-1881)			
	이름	재임 기간	관력
1	白興齡	1684.4.18.-	萬戶/鍼醫/內鍼
어영청(1657-1881)			
	이름	재임 기간	관력
1	權必經	-1680.윤8.6	鍼醫
2	白興齡	1687.2.15	萬戶/鍼醫/內鍼
3	吳重高	-1698.2.11	鍼醫/內鍼
4	李道明	1698.2.22.- 1704.2.22	惠民 主簿/鍼醫
5	秋天吉	1704.4.22.- 1705.9.12	萬戶/鍼醫
6	白興聲	1705.9.12.-	鍼醫/內鍼
7	白弘猷	1729.8.23.- 1729.10.17	鍼醫
8	金斗煥	1729.10.17.- 1737.5.10	鍼醫
9	權煒	1737.5.30.- 1737.10.7.	察訪/鍼醫
10	張景賢	1737.10.7.-	主簿/鍼醫/同參
11	鄭亨道	1746.2.26.-	鍼醫
12	鄭球	-1778.8.27	鍼醫
13	李景顯	1778.8.27.- 1786.12.14	鍼醫
14	李景溥	-1795.3.12.	鍼醫
15	趙致中	-1845.5.3.	鍼醫/內鍼
16	李昌備	1845.5.3.-	惠民直長/鍼醫
17	李昌修	1845.6.26.	外醫/鍼醫
18	朴教英	1848.8-	惠民主簿/鍼醫
19	金壽一	-1859.9.	鍼醫
20	姜緯永	-1864.12.20	鍼醫/惠民醫
21	趙琦煥	1864.11.20-	譯官/鍼醫
22	李殷懋	1880	鍼醫
23	趙琦煥	-1884.5.6	譯官/鍼醫
24	李興善	1884.5.6.-	鍼醫

26명 중 내침의로 내의원에 입속하게 된 이는 5명인데 비하여 동침의의 사례는 없다. 앞서 군문약방에서 내의원

입속자 6명 중에 4명이 의약동참인 점과 대비된다. 이로 미루어보면 각 군영이 약방과 침의라는 소용에 알맞은 인재를 채용하였다 평할 수 있다. 군문침의 중에는 아버지가 내침의여서 집안의 의술을 인정받아 침의로 임명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내침의의 자녀가 군문침의가 되거나, 군문침의 출신이 내침의가 되는 사례는 시기적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약방과 달리 침의 중에는 백흥령이나 추천길처럼 무관 출신의 인물이 임명되는 점도 다르다. 그런데 이들 사례도 시기적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이다. 가계 배경과 전력으로 볼 때 이 시기 군문침의의 위상이 가장 높았다.

조선후기 의료제도에서 외과술을 위주로 하는 침의는 12명이 정원인 내침의를 정점으로 하여 삼군영침의, 치종청과 해민서침의가 있었다. 군문침의가 실력 위주로 선발되었다면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내침의 제도 아래에서 더 많은 군문침의가 내침의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만 이러한 사례들이 집중됨은 다른 시기에 걸쳐 군문침의가 실력 위주로 선발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다. 군문침의 26명 중에 본인이 양의사 출신이거나 중인 가계 출신자는 20명에 달하여 76.92%에 달한다. 실력보다는 가계 배경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군문약방의 내의원 입속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쳐 있다. 또한 양의사 출신이거나 중인 가계 출신의 비율이 37.5%에 불과하다. 군문침의와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이점만으로 군문약방의 선발이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었는가 결론내리기 어렵다.

3. 군문마의

1) 규정

(1) 관계 변화

군문마의라는 특성상 기병을 위주로 한 군영에 필요한 직임이다. 따라서 군문마의는 모든 군영에 있지 않고, 주로 삼군영에만 있었다. 수어청에 마의가 있었다는 문헌적 근거는 없으며, 충융청마의는 연대 미상의 『충융청사례』에 1인으로 언급되므로⁶³⁾ 특정 시기에는 임명되었다. 여러 문헌에서 삼군영마의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표 11).⁶⁴⁾

62) 박훈평(2018), op. cit. p. 18, 37, 38, 60, 80, 157, 208, 209, 265, 291, 303, 348, 378, 401, 411, 415, 418, 437, 479, 489, 544, 547. 재임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11. 삼군영마의 정원 변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각영이정청등록 1705	1	-	(理馬 1)
신보수교집록 1739	1	1	(理馬 1)
만기요람 1808	1	1 別騎衛兼職	1 閑散
육전조례 1867	1	1	1

마의는 처음에는 말을 돌보는 잡직인 理馬를 두었다가, 후에 마의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영청마의의 경우도 『신보수교집록』까지는 이마로 임명되었다. 이마는 치료보다는 말을 기르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임이다.

『훈국총요』(1864-1895)를 보면 훈련도감마의는 1634년에 만들어졌다.⁶⁵⁾ 이는 『승정원일기』 1634년(인조 12) 5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⁶⁶⁾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훈련도감도 1634년 마의를 두기 이전까지는 이마를 두었음이 확인된다.

금위영마의는 『금위영등록』의 임명 기사를 보면 적어도 1729년 이전에 개설되었다.⁶⁷⁾ 어영청마의는 『신보수교집록』⁶⁸⁾과 『어영청중순등록』⁶⁹⁾으로 볼 때, 개설 시기는 1739-1808년 사이로 추정된다. 충용청마의는 개설 시기와 혁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장용영마의는 『장용영대절목』에 “壬子胤”이라 하였으므로 1792년(정조 16)에 개설되었다.⁷⁰⁾ 문헌을 통해 살펴본 군문마의의 개설 및 혁파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2). 중앙군영에 마의를 두기 전에 도성의 마의직은 司僕寺의 체아직 정원이 전부였다.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각 1인씩 새로 정원이 생긴 셈이다.

표 12. 군문마의의 개설 및 혁파 시기

	소속	개설 시기	혁파 시기
1	훈련도감	1634년	1882년
2	금위영	1729년 이전	1881년
3	어영청	1739-1751년	1881년
4	충용청	미상	미상
5	장용영	1792년	1802년

63) 『충용청사례』 將官將校軍兵員役受料實數조. “馬醫 一人.”

64) 『각영이정청등록』 훈련도감조, 어영청개군제조. 『신보수교집록 병전』 경관직조.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02, 258, 293. 『육전조례 8책』 훈련도감조, 금위영조, 어영청조

65) 『훈국총요』(1864-1895). 將校조. “馬醫一人[仁廟甲戌册設.]”

66) 『승정원일기』 1634년(인조 12) 5월 14일 기사. “五百餘戰馬, 病蹇之患, 連續不絕, 不可無馬醫, 理馬一人, 依旗牌官例給料, 置諸軍中之意, 竝惶恐啟稟. 傳曰, 依啓.”

67) 『금위영등록』 1729년(영조 5) 9월 11일 기사.

68) 『신보수교집록 병전』 경관직조.

69) 『어영청중순등록』 신미년. 5월 13일 기사. 어영청(1747-1867). “御營廳中甸膳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70) 『장용영대절목 1책』. 將校조. “馬醫一人[壬子胤].”

71) 『신보수교집록 下 병전』 경관직조.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02, 258, 293.

72) 『훈국총요 제1책』(동양문고본) 將官將校軍兵員役受料實數조 “馬醫一人[每朔料, 米九斗, 太九斗, 奴料九斗, 別官. 春秋衣資木二疋, 春等草價木三疋, 幸行時軍服價三疋, 軍色].”

73) 『금위영사례』 가포일년응하조. “馬醫一人等布一疋.”

(2) 임명 및 체차

군문마의는 별도로 정원이 정해진 경우와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헌을 통해 살펴 본 군문마의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표 13).⁷¹⁾ 군문마의도 별도의 임기는 없다.

표 13. 군문마의 임명 방식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신보수교집록 1739	-	禁軍廳馬醫, 兼察	0
만기요람 1808	-	별기위 겸직	閑散

(3) 급료

군문마의들에 대한 급료는 해당 군문의 사례집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훈국총요』 중에 훈국마의 급료는 아래와 같이 장서각 소장 2책본에만 기록되었다.

『將官將校員役軍兵料祿數』조. 朔料마다 쌀 9말, 콩 9말, 奴料 9말이다. 別官의 경우. 봄가을 옷감으로 무명 2필, 봄계절의 草價로 무명 3필, 幸行 때의 군복값 3필, 군색이 준다.⁷²⁾

『금위영사례』를 보면 금위영마의는 아래와 같이 급료를 받았다.

『價布一年應下』조. 마의 1인은 1필이다⁷³⁾

『米一年應下』조. 별기위 중에서 겸하여 임명한다.⁷⁴⁾

어영청마의에 대한 급료 기록이 있는 문헌은 없다. 수어청 관련 규정집은 현재 소장처가 없다. 『충용청사례』의 마의 급료 기록은 다음과 같다(표 14).

표 14. 『총융청사례』의 마의 급료 기록

항목	내용
將官將校軍兵員 役受料實數	달마다 급료로 쌀 9말, 콩 9말, 동짓날 쌀 2말 5되. 糶餉色이 지급한다. 봄가을 옷감 값 매번 똑같이 4냥, 歲饌錢 4전, 冬歲炭 1섬, 軍色이 지급한다. ⁷⁵⁾
冬炭例下	1섬

이상 오군영 마의의 급료를 살펴보면 시기별 근무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약방과 침의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급료 수준이다.

(2) 군문마의 일람

문헌을 통하여 조사된 군문마의는 다음과 같다(표 15).

표 15. 군문마의 목록

훈련도감(1634-1882)			
	이름	재임 기간	
1	金潤彬	-1779.8.10 ⁷⁶⁾	
2	曹潤玉	-1800.5.3 ⁷⁷⁾	
금위영(?-1881)			
	이름	재임 기간	비고
1	趙次龍	-1729.9.11 ⁷⁸⁾	
2	金萬柱	-1742.9.4 ⁷⁹⁾	別將廳 火砲 馬醫
3	鄭震興	-1742.9.4 ⁸⁰⁾	別將廳 火砲 馬醫
4	柳枝興	-1744.11.7 ⁸¹⁾	別將廳 火砲 馬醫
5	閔興大	-1872.6.9 ⁸²⁾	
어영청(?-1881)			
	이름	재임 기간	
1	咸斗星	-1751.5.13 ⁸³⁾	
2	金三萬	-1779.8.10 ⁸⁴⁾	
3	權學信	-1836.3 ⁸⁵⁾	
장용영(?-1802)			
	이름	재임 기간	
1	金始輝	-1786.12.14 ⁸⁶⁾	

74) 『금위영식례』 미일년응하조. “別騎衛 中兼差.”

75) 『총융청사례』 將官將校軍兵員役受料實數조. “每朔料米九斗冬至米二斗五升餉色上下春秋衣資每等四兩歲饌四錢冬炭一石軍色上下.”

76) 『승정원일기』 1779년(정조 3) 8월 10일 기사.

77) 『승정원일기』 1800년(정조 24) 5월 3일 기사.

78) 『금위영등록』 1729년(영조 5) 9월 11일 기사.

79) 『금위영등록』 1742년(영조 16) 9월 4일 기사.

80) 『금위영등록』 1742년(영조 16) 9월 4일 기사.

81) 『금위영등록』 1744년(영조 18) 11월 7일 기사.

82) 『금위영등록』 임신년. 6월 9일 기사.

83) 『어영청중순등록』 신미년. 5월 13일 기사. 어영청(1747-1867). “御營廳中甸曆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84) 『승정원일기』 1779년(정조 3) 8월 10일 기사.

85) 『어영청전령등록』 병신년. 3월 기사. 본고에서 『어영청전령등록』 원문은 어영청(1795-1881). “御營廳傳令曆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86) 『일성록』 1786년(정조 10) 12월 14일 기사. 본고에서 『일성록』 원문은 규장각(1760-1910).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 검색(2022.1.1.)

III. 결론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군진의학 제도는 군문약방, 침의, 마의가 핵심이다. 군문약방과 침의는 군병의 구제와 치료하기 위해, 마의는 기마병을 위한 전투마의 養馬와 치료를 위해 배속되었다. 여러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고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선후기 군진의학은 외과 치료보다 내과 치료를 우선시했다. 군문약방은 침의에 비하여 정원이 많고 먼저 개설되었다. 군문침의는 삼군영과 장용영에만 있다. 반면 군문약방은 오군영 모두에 개설되었다. 이는 약처방 중심이라는 군진의학 전문서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둘째, 군문약방과 침의는 양의사 출신이 선호하지 않는 직임이었다. 예를 들어 숙종 후기에 양의사에서 임명되는 방식을 취하다가 양의사에서 상소하여 방외의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급료 수준과 출세의 기회 보장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셋째, 군문침의는 규정처럼 실력 위주로 선발되지 못했다. 만약 그렇게 선발되었다면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내침의 제도 아래에서 더 많은 군문침의가 내침의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만 이러한 사례들이 집중된다. 이는 다른 시기에 걸쳐 군문침의가 실력 위주로 선발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오군영 중 수어청 관련된 문헌은 현존하지 않아 나머지 군영만 다룬 점은 한계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지방군영, 시기적으로는 조선전기 군진의학과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향후 이러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수어청 관련 문헌이 발굴되는 성과가 있어서 조선시대 군진의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위빙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해국지』. 서울:퍼플. 2015: 69, 71.
2. 김종수. 『숙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2018:121-146.
3. 김준혁. 『정조가 만든 조선의 최강 군대』. 남양주:더봄. 2018:197-236.
4. 노영구, 이왕무, 정정남, 유현재, 최주희, 유승희 외 2인.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2018:29.
5.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권오민, 안상우. 「군중의약 번역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0;23(1):31-46.
6.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15;28(2):59-72.
7.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회. 2018:11-604.
8. 박훈평. 「의정부 약방 식례 연구」. 한국사학회지. 2020; 33(1):21-30.
9. 서영보, 심상규 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역. 『국역 만기요람 2』.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1:202-322.
10. 오준호. 「군진의서 행군방편편방의 구성과 내용」. 혜화학회지. 2014;22(2):57-66.
11. 이선동, 최찬호. 「군장병의 한방 양방군의관 필요성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방 군의관 제도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98;2(1):67-79.
12. 이현숙. 「몸 질병 권력 - 통일전쟁기 신라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2003;6:11-41.
13. 장용영 편. 정동진, 류주희, 문순요 역. 『역주 장용영고사』. 수원:수원시. 2005:81.
14. 장용영 편. 『원문 장용영고사』. 수원:수원시. 2005:45.
15.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심약사례 하』. 서울:퍼플. 2015: 97-104.
16. 정혜은.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류 자료에 관한 기초적 검토」. 장서각. 2000;4:127-155.
17.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394, 427-429.
18. 규장각(1760-1910).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
19. 금위영(1867). “禁衛營事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2021.12.30.)
20. 금위영(1682-1883). “禁衛營膳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21. 김재로(1746). “續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22.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2.1.10.)
23. 어영청(1707). “御營廳舊式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24. 어영청(1747-1867). “御營廳中甸膳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25. 어영청(1795-1881). “御營廳傳令膳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2.1.1.)
26. 어영청(1868). “御營廳式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2021.12.30.)
27. 이정청(1705). “各營釐整廳膳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28. 장용영(1791-1802). “壯勇營大節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29. 조현명(1739). “新補受教輯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12.31.)
30. 충용청(연대 미상). “摠戎廳事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31. 홍종서(1867). “六典條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2.1.10.)
32. 훈련도감(19세기). “訓局摠要”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DB(2021.12.29.)
33. 훈련도감(1820). “訓局摠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2021.12.29.)
34. 훈련도감(1864-1895). “訓局摠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2021.12.29.)